

충남대학교 대학원 관현악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개정 2015. 4.20.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현악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본 학과의 논문제출자격시험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2. 전공실기 1, 전공실기 2, 전공실기 3을 이수한 자에게만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3. 출제과목 수는 전공영역 과목에서 석·박사 각각 3과목 이상으로 한다.
4.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하며 채점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자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과목으로 한다. 단, 불합격 과목은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6.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본 학과의 외국어능력 기준은 토익 500점 이상 또는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강좌 및 프랑스어강좌 또는 독일문화원의 독일어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4.20.)

제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본 학과는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

제8조 (논문지도위원회) 본 학과는 석사학위과정에 대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4.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